

의안번호	제711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24년 10월 2일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11
------	-----

제출연월일: 2024년 10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축수산과장)

가. 제안이유

- 개에 의한 상해 및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전면시행됨(' 24.4.27)
-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질평가제'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지식과 시설을 보유한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위탁사무명 :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무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2. 추진 필요성

- 본 사무는 도지사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거, 법에서 정한 맹견 및 사고분쟁 발생견에 대한 공격성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 지정, 교육, 훈련 등을 소유자에게 명령함으로써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무로 맹견에 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과 관련지침에 따라 적합한 규격을 갖춘 시설이 필요함
- 기질평가 시 관련자와 보조건의 안전을 위해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맹견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 장비와 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 공개모집을 통해 기질평가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라. 주요 위탁사무

- 맹견사육허가 등에 따른 기질평가(동물보호법 제18조)
-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에 따른 기질평가(동물보호법 제20조)
- 맹견이 아닌 사고 분쟁견의 기질평가(동물보호법 제24조)
- 기질평가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와 사람의 안전사고 예방
- 기질평가 수행 가능한 전문인력 교육 및 운영
- 기질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활용
- 공정한 기질평가 수행을 위한 영상촬영 및 기록
- 그 밖에 관계법령·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반려견 기질평가 및 동물복지 정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마. 위탁계획

1.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2. 위탁대상 : 도내 기질평가 가능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3.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심의·선정
4. 수탁자격 : 도내 기질평가 가능한 전문인력과 시설 보유
5. 소요예산(안) : 38,500천원(도비 100%) ※ 1년 기준
 - 산출근거 : 1년 110두 (도내 연평균 개물림사고 97건+맹견 신규 등록 9건)
 - 산 출 식 : 3,500천원/회 × 11회(1회 10두씩 평가) = 38,500천원

< 비용 산출 세부내역 >

구분		단가(원)	인원	비용(원)	비 고
사 설 비	평가진행자	800,000	1	800,000	
	평가보조인력	250,000	5	1,250,000	
	평가보조견	250,000	4	1,000,000	대형견 2, 소형견 2
	건강검진비용	250,000	1식	250,000	마리당 필요시
	보험료	200,000	1식	200,000	
	(소계) 1회당 평가금액				3,500,000
※ 시설비 투자 없음(기질평가 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업체에 위탁)					

바. 참고사항

1.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2. 관계 법령 : ‘붙임’



반려견 기질(위험성)평가 운영 민간위탁 계획

2024. 9.



농정국
축수산과

반려견 기질(위험성)평가 운영 민간위탁 계획

맹견¹⁾사육허가제²⁾가 본격적으로 시행('24.4.27.)됨에 따라 사육허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맹견기질평가제³⁾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위탁기간(3년) : '25. 1. 1. ~ ' 27. 12. 31.

- 사업예산(1년) : 38,500천원 (도비 100%)

1) 법적 맹견 : 다음 5종 및 그 잡종의 개

- ①도사견 ②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③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④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⑤로트와일러

2) 맹견사육허가제 : 맹견을 기르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사육해야 함

3) 맹견기질평가제 : 개의 행동양태 등을 종합분석하여 개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제도

I 추진배경

-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
- 동물행동 전문기관(관련 대학 또는 훈련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신규제도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고취

II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무의 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Ⅲ 위탁개요

- 사무명 :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위험성)평가 운영
- 위탁기간 : 2025년 위탁개시일부터 ~ 2027년 12월 31일(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 위탁
- 자격요건 : 평가시설*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
 - * 농식품부 반려견 기질평가 조례 표준안에 따름
- 사업예산 : 38,500천원(도비 100%) ※ 1년 예산
 - 산출근거 : 1년 110두 (도내 연평균 개물림사고 97건+맹견 신규 등록 9건)
 - 산출식 : 3,500천원/회 × 11회(1회 10두씩 평가) = 38,500천원

< 비용 산출 세부내역 >

구분		단가(원)	인원	비용(원)	비고
인건비	평가진행자	800,000	1	800,000	
	평가보조인력	250,000	5	1,250,000	
	평가보조견	250,000	4	1,000,000	대형견 2, 소형견 2
	건강검진비용	250,000	1식	250,000	마리당 필요시
	보험료	200,000	1식	200,000	
	(소계) 1회당 평가금액			3,500,000	10마리 기준
※ 시설비 투자 없음(기질평가 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업체에 위탁)					

- 위탁기관 주요업무
 - 맹견사육허가 등에 따른 기질평가(동물보호법 제18조)
 -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에 따른 기질평가(동물보호법 제20조)
 - 맹견이 아닌 사고 분쟁견의 기질평가(동물보호법 제24조)
 - 기질평가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와 사람의 안전사고 예방
 - 기질평가 수행 가능한 전문인력 교육 및 운영
 - 기질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활용
 - 공정한 기질평가 수행을 위한 영상촬영 및 기록
 - 그 밖에 관계법령·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반려견 기질평가 및 동물복지 정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IV 추진절차

①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사무 등 	'25. 1.
② 수탁기관 모집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 공개모집(14일 공고) 	'25. 2.
③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5 ~ 9명(위원장1, 부위원장1 포함) - 심사 : 전문성, 사업계획 등 - 결정 : 최고 득점자 선정 	'25. 2.
④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계약기간 : 3년 	'25. 3.
⑤ 사무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 사무개시 (전문기관) 	'25. 3.

※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위험성)평가 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4. 10월 ~ 11월

V 기대효과

- 도내 신규 맹견사육허가 및 개물림 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시 전문기관을 통한 기질(위험성)평가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여 사람과 동물이 다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 조성

VI 향후계획

- 도의회 동의 : '24. 10월 ~ 11월
- 기본계획 수립 : '25. 1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 '25. 2월
- 수탁기관 심의·평가 및 선정 : '25. 2월
- 협약체결 및 업무개시 : '25. 3월

참고1

맹견 사육허가 신청

< 관련 근거 >

-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 '24. 4. 27부터 시행 중

< 맹견사육허가제 주요내용 >

- 기질평가란? 개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분석하여 개의 공격성을 판단함
-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기르려면 지자체장(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사육해야 함
-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5가지 품종* 및 그 잡종의 개
 - ①도사견 ②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③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 ④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⑤로트와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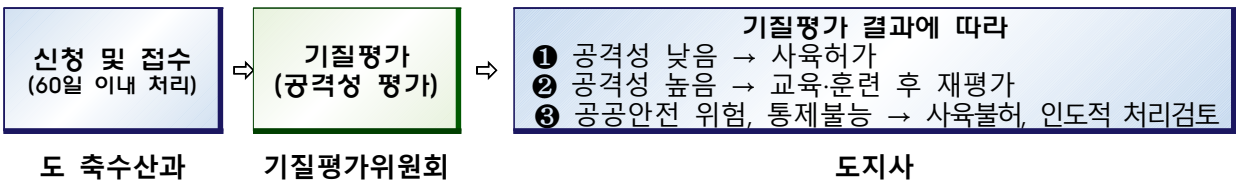


○ 신청 절차는?

- 신청대상 : 도내에 동물등록된 2개월령 이상의 맹견
- 신청방법 : 소유자가 담당부서(도 축수산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① 맹견사육허가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포함) 1부.
- ② 소유자 본인이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사진단서 1부.
- ③ 동물등록증 사본 1부. *법적의무
- ④ 맹견 배상책임 보험증서 1부. *법적의무
- ⑤ 맹견 중성화 수술 증명서(확인서) 1부. *법적의무
 - ✓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14일내 발급) 제출 시 유예 가능
- ⑥ 기질평가 신청서 및 사전설문조사표 1부. *법적의무 / 소유자 부담비용 1마리당 25만원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진·영상 촬영 및 촬영물 사용 동의서 각 1부.

< 처리절차 >



< 도내 맹견 현황 > '24. 9월 기준

구분	계	창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소유자(명)	42	17	5	8	3	3	1	-	2	-	3	-
맹견(두)	68	22	26	8	3	3	1	-	2	-	3	-

□ 동물보호법**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 ③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사무의 위탁)**

- ①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위한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평가시설, 평가보조인력, 보조견 등 해당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3을 넘을 수 없다.